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난관리·안전관리 공사를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86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난관리·안전관리 공사를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4일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재난관리·안전관리 공사를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 관리에 대한 공사를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의 공사 착공을 금지하면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사 착공을 허용하고 있음¹⁾.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완료 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²⁾하

- 1)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고 있는데,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그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바로잡고 법률 유보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³⁾하고 있어 그 사업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공사 중 긴급성이 요구되어 사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례로서, 우리 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한바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541

- 4) 동 법률안은 2023년 1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25년 2월 21일 시행예정임.
-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